

대학가 불법복제물로 몸살 앓는 출판계

전공·교양서적 중심으로 광범하게 자행... 법적 규제대책 시급

대학가의 불법복제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대학생, 복사점, 심지어 대학당국까지 가세한 불법복제의 규모와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출판산업의 토대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경희)의 《전국도서무단복사 실태조사》(1995)에 따르면, 대학생의 월평균 복사비용(5,012원)을 기준으로 연간 약700억원에서 1,200억원, 복사본 보유실태(1인 평균 2.03권)를 기준으로 약 188억원에서 325억원 정도가 저작권자 및 출판권자의 손실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2년 전의 수치이므로 현재의 피해상황은 훨씬 커질 것이다.

심지어 베스트셀러까지 버젓이 복제

대학가에서 학기초만 되면 학교 앞 복사점과 구내 복사점은 문턱이 닳는다. 새학기 교재를 복사하려는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루기 때문이다. 복사기의 광원에 매초마다 탄생된 사생아 서적들이 저자와 출판사의 영양분을 갈취하고 있는 셈이다. 예전에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원서나 절판된 국내 서적이 주로 복제대상이었지만, 요즘에는 버젓이 저자와 출판사가 명기된 국내도서를 해적질하고 있다. 불법복제물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고성능 복사기의 발달과 보급에 따라 그 피해액과 출판사에 미치는 파급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S대 전자공학과와 한 대학생에 따르면, 학기초마다 과대표가 복사 신청서를 받아 복사점에서 대량으로 복사·제본한 교재를 나누어준다. 예를 들어, 전공서인 《전자기학》은 원가가 2만 1,000원이지만 복사본은 1만 2,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수요가 많은 교재들은 아예 구내 복사점에서 수십권씩 제본해 판매하기도 한다. “복사물은 인쇄 상태나 종이 질이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사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복사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도 않다.

최근에는 대학도서관이나 각 단과대학별로 무인 복사기가 설치되어 학생들이 복사카드로 직접 복사를 하기도 한다.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기 때문에 굳이 책을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대학가의 불법복제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도서관 등에 무인 복사기가 설치돼 있어 학생들이 복사카드로 직접 복사하기도 한다. 불법복제는 대학교재에만 그치지 않는다. 중·고학습지부터 베스트셀러까지 고습 마스터기계를 이용해 복제해서 버젓이 판매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러한 대학가의 불법복제 때문에 일차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대학교재 출판사들이다. 법문사·박영사·형설출판사 등 대학교재 출판사에 따르면, 교재 판매부수가 작년 대비 10~15% 정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는 경기불황의 여파도 있지만 학생들이 자체가 책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힌다.

불법복제는 대학교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중·고학습지부터 《고시계》 등의 잡지, 심지어 《아버지》와 같은 베스트셀러까지 고습 마스터기계를 이용해 원도서와 거의 비슷한 책들을 복제한다. 심지어 중소형 서점에서 이를 버젓이 판매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유통질서가 교란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들의 권리 침해는 추정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주로 밤에 대량 복사

이처럼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불법복제에 대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까지 학생·저자·출판사·복사업체 등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불법복제의 규모가 막대하고 방법이 치밀해서 출판사들이 개별적으로 지구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는 82년부터 ‘무단복사금지 대책위원회’(위원장 배효선)를 구성해 저작권자 및 출판권자의 위임을 받아 순수 저작물 및 출판권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무단복사 금지대책 사업을 펼



고속 복사기로 대량 불법 복제를 자행하고 있는 대학가 복사점.

치고 있다. 총41개 출판사 대표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는 회원사들의 사업비 찬조를 받아 운영된다. 무단복사 단속원 4명이 전국 시단위의 행정구역 중심으로 매학기(2~3월, 9~10월)에 집중적으로 계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복사업소, 각급 대학 및 중·고등학교, 서점 등 2,000여 곳에 경고문을 발송하고 교육부·문화체육부·검찰청 및 경찰청에 협조문을 발송한다. 이러한 계도활동뿐만 아니라 단속활동도 강화해 95년에 332건(서울 85, 지방 247), 96년에는 325건(서울 83, 지방 242)을 적발했다. 올해는 11월 현재까지 410여곳을 적발했다고 한다.

출판협회의 무단복사 단속원인 노태석씨는 “우리에게 무단복사를 단속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단속을 나가면 이미 주변 지역의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거나 증거물을 치워버린다고 한다. “주간에는 1~2쪽만 소량 복사하고, 주로 밤에 학과대표나 동아리회에서 대량주문한 것을 복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무단복사 적발도서는 해당 출판사 및 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고소 증빙자료 서류 등을 제출해 위임받은 후 출현회장이 해당 검찰청 및 지청에 저작권법 제98조에 의거, 고소를 제기한다.

96년도 불법복사 적발도서 처리현황을 보면 총 325건 중 고소 138건, 출판사 고소포기 120건, 저자 고소포기 17건 등으로 사법

처리된 경우는 40%에 머무르고 있다. 출판협회 장영태 회장은 “저작권자인 대학교수들이 제자들의 행위를 대상으로 법률적인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정서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리고 출판사측의 ‘출판권’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한 것도 낮은 고소율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54조 ‘출판권 설정’ 조항에 따라 저작권자와 문서상 출판권을 설정한 출판권자는 제3자가 권리를 침해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출판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행사하는 출판사들은 많지 않은 형편이다.

‘사적 복제 보상금제도’ 등 입법화 난항

복제수단이 대중화되고 디지털 기술까지 등장함으로써 무차별적인 사적 복제로 인한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독일·스페인·프랑스·일본 등 18개국에서는 ‘사적 복제 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복사기·녹음기·녹화기 등 복제기기를 구입한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복제물의 사용자는 복제기기 가격의 1~2%를 추가하여 복제기기 제조자에게 지급한다. 제조자가 이를 저작권 단체에 지급하면 이 단체는 회원인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거나 문화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산에 오르면

어렵고 답답한 때일수록
산은 더욱 반갑게 우리를 맞아 줍니다.
넉넉한 침묵의 미소로
세속의 별것 아닌 번뇌쯤
한적한 바위 틈, 풀숲 사이에
묻어 두고 가라고 이릅니다.



사업내용

집필 : 자서전 · 회고록 · 개인출판 · 위인전 등
 운문 :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리라이팅
 교정 : 사전류 · 참고서류 · 한서 및 학술서적 등
 편집 : 백과사전 · 잡지 · 사보 · 학회지 · 교지 등

기جه설비

매킨토시 7대, 집필/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4대
 스캐너 3대, 인화지/필름 출력기 1대
 ● 24 시간 출력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아래이한글 3.0, 프로 96).



三現編輯室

대표자 : 김문권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 549-6883~5 팩 스 : 549-6877
 천리안 ID : SAMYEUN

저작권법 관련조항

제27조 '사적 이용(私的利用)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제54조 '출판권(出版權)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출판권)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을 설정 받은 자(출판권자)는 그 설정 행위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제부가 이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해 몇차례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9월에 열린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대책' 제1차 공개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내년 7월 경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및 전자업계에서 소비자 부담과 물가상승, 전자업계의 국제경쟁력 약화, 무차별적인 복제보상금 부과의 부당성을 근거로 들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수원대 황적인 교수는 <사적 복제 보상금제의 긍정론>이라는 논문에서 "소비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이득을 받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법률상 보상해줄 의무가 있다. 또한 그 이익에 비하면 보상하는 액수는 그다지 큰 부담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보상 받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그것으로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저작물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복제보상금은 내수용 제품에

만 과하고 수출용 기기에는 면제되므로 수출가격에는 차이가 없고, 저율의 복제보상금을 낸다고 하여 수요감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채명기 연구원은 "불법복제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현행의 '친고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법권을 가진 기관이 우선 단속을 마치고 권리자에게 의사를 묻기 때문에 효과적인 단속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저작물의 불법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외국에 통상압력을 위한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합부로 법규를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사적 복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복사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미국의 'CCC(Copyright Clearance Center)'와 독일의 'VG-WORT(어문저작권관리협회)', 그리고 일본의 '일본복사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판물 등의 복사에 대해 정상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료를 지급해야만 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권리행사에서는 개개의 권리자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제집중단속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각 출판사들이 개별적으로 무단복사 단속을 할 수 없으므로 출협 등 공공단체에 집중단속권을 강화하고 법률적인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 이를 위해 출판계 전체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공동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생, 출판사, 복사업체 등이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무단복사 금지대책위원회 배효선 위원장은 "출판계 전체가 무단복사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자기 자신이 직접 피해를 당하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다른 사람이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천홍 기자